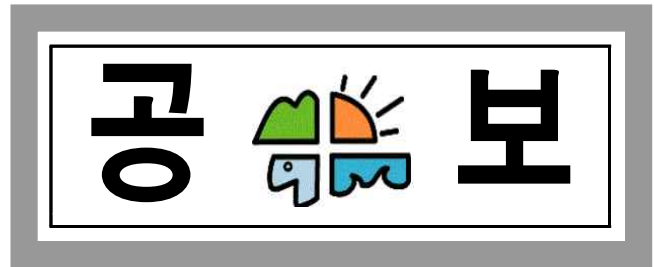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512호 2024년 1월 19일(금)

고 시

- 소하천등 정비 허가 고시 2

공 고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 3
-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공고 4
- 속초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18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22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소하천등 정비 허가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하였기에,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속 초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김상O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성천길 61-**-
소하천명		불미앞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속초시 장사동 304-23, 장사동 304-24		
	면적	39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4. 1. 12.~2026. 12. 31.		
	목적 및 사유	제방도로 확·포장(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속 초 시 장

점용자	상 호 및 명 칭			
	대 표 자 (성 명)	주 광 0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16번길 **
소하천명		응골3천		
점용	위 치	속초시 노학동 1293, 1293-29, 1293-30, 1293-31		
	면적	10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4. 1. 1.~2028. 12. 31.		
	목적 및 사유	진출입로(소교량)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공고

관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철거비를 지원하는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속 초 시 장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 지원금액

- 철거(활용) : 1동당 철거비의 100%(최대 10백만원 지원)
※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등)로 제공하는 소유자
- 철거(단순) : 1동당 철거비의 80%(최대 4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 빈집을 자진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서류

-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 소유권 증빙서류

· 건축물의 실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물의 상속자에 한하여 신청가능(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빈집현황 사진

○ 접수장소 : 속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종합민원실 2층)

○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 접수

○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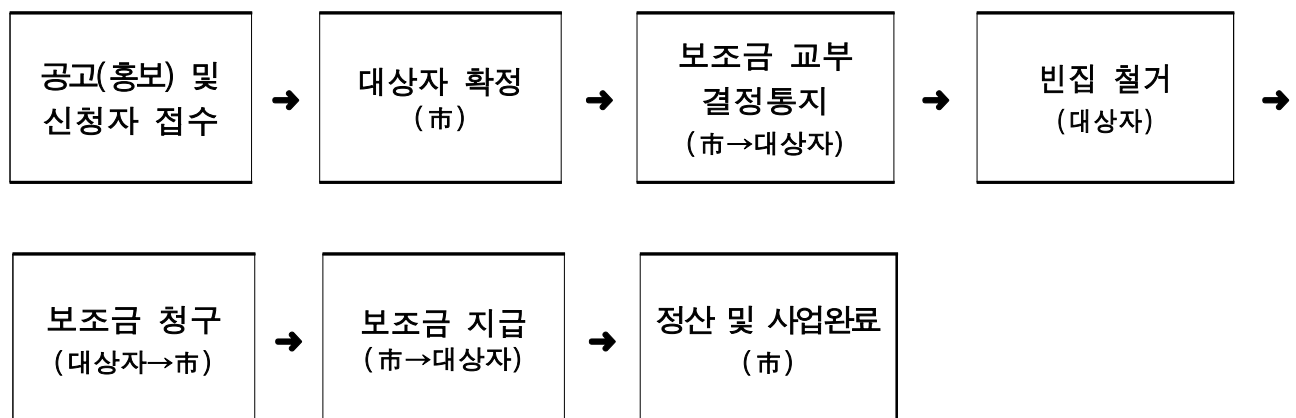
1순위	빈집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4등급(철거대상) 빈집
2순위	악취발생 및 주변 미관이 저해되고 민원소지가 많은 빈집
3순위	환경 유해성이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 빈집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현장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속초시에서 우선순위대상자 선정하며, 근저당 등 채권설정 물건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되며, 교부 결정 이후 2개월 이내에 사업진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제외대상부지 : 주택건설사업, 대형건축물, 주택재개발 부지 등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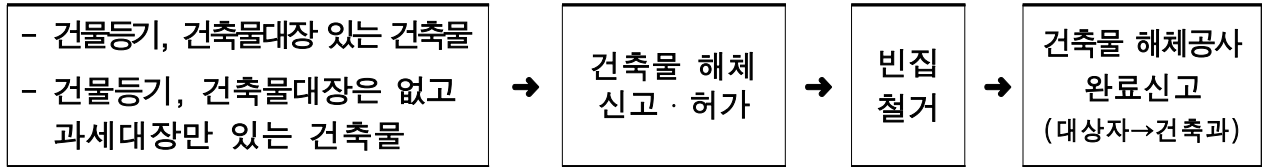


□ 세부추진절차

추진단계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비고
공고(홍보) 및 신청자 접수 (대상자)	-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소유권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 빈집현황사진[서식2]	
대상자 확정 (市 건축과)	- 빈집정비 보조사업 신청서[서식3] ※ 철거계약서, 철거견적서,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 지원사업 실행계획서[서식4] - 확인서[서식5] ※ 인감증명서 첨부 - 빈집정비 보조사업 청렴 이행계약서[서식6]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市 → 대상자)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허가) 관련 서류 ※ 건축물해체신고서, 위임장, 해체계획서, 검토확인서(건축사), 석면조사 보고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인 경력증명서, 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첨부 ※ 해체허가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빈집철거 (대상자)	- 철거 전 · 중 · 후 사진촬영[서식7] ※ 주변 도로 또는 지형지물이 나타나게, 중장비 투입 철거 시 확인할 수 있게, 철거 위치에 건축폐기물 등 잔해가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한 후 촬영 - 석면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 적법처리(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 ※ 빈집 철거부지에 있는 건축물 기초 및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 정화조까지 모두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 유지 ※ 슬레이트 등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 장비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 지출을 증빙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반드시 제출	
보조금 청구 (대상자 → 市)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신고 관련 서류 ※ 건축물 해체신고 완료보고서, 건설폐기물필증, 사진대지 등 ※ 해체허가의 경우 감리완료보고서 첨부 - 빈집정비사업 완료보고[서식8] - 사업비 집행내역서[서식9] - 보조금 청구서[서식10] ※ 지출증빙 서류 : 통장사본, 철거비 지급내역서, 철거 견적서, 철거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 철거업체 건강 · 연금 보험료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 지출증빙 미 첨부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지출액이 교부결정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출액만 보조	
보조금 지급 (市 → 대상자)	※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집행내역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증빙 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정산 검사 및 사업완료 (市)		

□ 빈집 철거 시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

- 건축물 해체신고·허가 관련(문의 : 건축과 건축정책팀 ☎033-639-1513)



※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건설폐기물 및 석면함유(슬레이트 등) 해체 관련(문의 : 친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033-639-2337)

- 빈집철거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5톤 이상 배출 시 친환경정책과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석면함유 제품 해체·제거 작업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 해체·제거업체가 실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빈집철거의 기준은 철거부지에 있는 건축물 기초 및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경우 정화조까지 모두 철거한 후 각종 건설폐기물을 처리 완료한 상태여야 함.
 - 보조금 청구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통장은 해당 사업 신청자와 일치하는 예금주여야 하며, 계좌에서 철거전문업체 계좌로 보조금이 지급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 및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 정산액(지출 증빙 금액)이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비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감액되어 지출액만 보조됨.
- ☞ 상기 유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 1 ~ 10] 각 1부.

【서식 1】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신청자 현황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연락처)		
	가구유형	☐ 수급 ☐ 차상위계층 ☐ 일반		
철거 대상 건축물 현황	위 치			
	규모(㎡)		지붕 형태	☐ 슬레이트지붕 ☐ 일반지붕
	용 도		구 조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 등재 ☐ 미등재		
	빈집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속초시(건축과)에서 작성		
철거 예정일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빈집을 철거할 것을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서식 2】

빈집 현황 사진

☐ 빈 집 위 치 : 속초시

☐ 사업대상자 :

원 경 사 진

근 경 사 진

【서식 3】

빈집정비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사업자		대 표 자	
주 소	☎		
보조사업명	2024년 빈집정비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보조사업비	총사업비	시 비	자 부 담
(단위 : 원)			
보조사업기간	2024. . . ~ 2024. . . (개월간)		
사 업 계 획	“별 첨”		
사업위치 및 규모	위치 : 속초시 동 번지 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구조, m ²		
위와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합니다. 2024. . . 신청자 성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철거 견적서 1부. 3. 철거 계약서 1부.		

【서식 4】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1. 사업명 :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기간 : 2024. . . ~ 2024. . .
- 위치 : 속초시 동 번지
- 사업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사업내용 : 지하 층 / 지상 층, 구조, m²

3.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주 요 내 용	세부추진내용
월 일		
월 일		
월 일		

4.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 사업비 사용방법 : 자부담으로 건축물 철거 후 보조금 청구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계(A+B)	보조금신청액(A)	자부담(B)
빈집철거			

확 약 서

1. 신청사업 : 2024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2. 확인내용

본인은 2024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강원도
속초시 ()소재 건축물이 현재까지
본인 소유이며, 문제발생시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

☐ 건축물 소유자(확약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붙임 인감증명서 1부.

속초시장 귀하

【서식 6】

빈집정비 보조사업 청렴 이행계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속초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속초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속초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보조사업자 성명 (서명)

【서식 7】

사 진 대 장

- 위 치: 속초시
- 사업대상자:

철 거 전	
철 거 중	
철 거 후	

【서식 8】

빈집정비사업 완료보고

1. 사 업 명 : 2024년 빈집정비 보조사업

2. 사 업 량 :

3. 사업위치 :

4. 총사업비 :

(단위 : 원)

사업량 (세부사업명)	사업비			비 고
	계	시비	자부담	

5.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사업계획과 같이 빈집정비(철거)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보조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제 출 자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서식 9】

사업비 집행내역서

☐ 사업비 집행현황(당초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대비 작성)

(단위 : 원)

구분 항목	보조금 신청시(A)			정산시 집행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지 출 내 역			집 행 구 분
지출일자	항목 및 산출내역	지출액	
계			
2024. . .			
2024. . .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내역(잔액 발생시)

○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 기재

보조금 청구서

1. 청구금액 : 금 원정(금 원정)
2. 청구인 : ()
3. 계좌번호 : (은행명 :)

상기 금액을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사업 민간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4. . .

신청자 성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철거비 지급내역서 1부.
2. 철거 견적서 및 철거 계약서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4.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 1부.
5. 철거 업체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속초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에 따른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속초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2. 모집인원 : 10명 내외
3. 모집분야
 - 건축계획, 구조, 시공, 토목, 토질 및 기초, 조경, 소방, 설비
4.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해 연임가능)
5. 기 능 :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속초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심의사항 심의
6. 응모자격 : 아래 여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 소지자
 - 모집분야 전공자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응모기간 및 접수
 - 기 간 : 2024. 1. 17.(수) 09:00 ~ 2024. 1. 30.(화) 18:00
 -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청 미래도시국 건축과(2층) (☎ 033-639-2769)
 - 접수방법
 -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2층 건축과 (동명동)
 - 이메일 : ironhee79@korea.kr
* 이메일 접수 시 접수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접수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속초시 건축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등 첨부 서류 일체

○ 제출서류

- 속초시 건축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등 첨부 서류 일체

8. 기타 안내사항

○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사법처리 된 사실이 있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미래도시국 건축과(☎ 033-639-2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개모집 지원서 양식 1부. 끝.

속초시 건축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사 진 (3cm×4cm)	
성 명		홍 길 동 (한문) 洪 吉 東		영 문			
생년월일		19〇〇. 〇 . 〇〇. (만〇〇세)		성 별 남/여			
주 소		직 장	(우)				
		자 택	(우)				
연 락 처		직 장	Tel Fax				
		자 택	Tel Fax				
		휴대폰			E-mail		
학 력	학 교		전 공		기간(부터~까지)		학 위
					~		
					~		
					~		
주 요 경 력	소속기관		직위(급)		기간(부터~까지)		주요업무
					~		
					~		
					~		
관 련 활 동	참여 활동(위원회)명		직위(급)		기간(부터~까지)		비 고
					~		
					~		
					~		
자 격	자격종목		등 급		취득연월일		시행처
저서논문							
기 타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상기와 같이 속초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응모가 무효 처리되고, 향후 5년간 응모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속초시장 귀하

속초시 건축위원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	------	--

본인은 속초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인 :

속초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속초시는 속초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e-mail, 학력 및 경력(자격), 사진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속초시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3년(해촉 시 까지)
- 보존사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속초시 건축위원회 현황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소속, 직위
- 정보의 이용 목적 : 속초시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공개 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해촉 시 관련 자료 삭제)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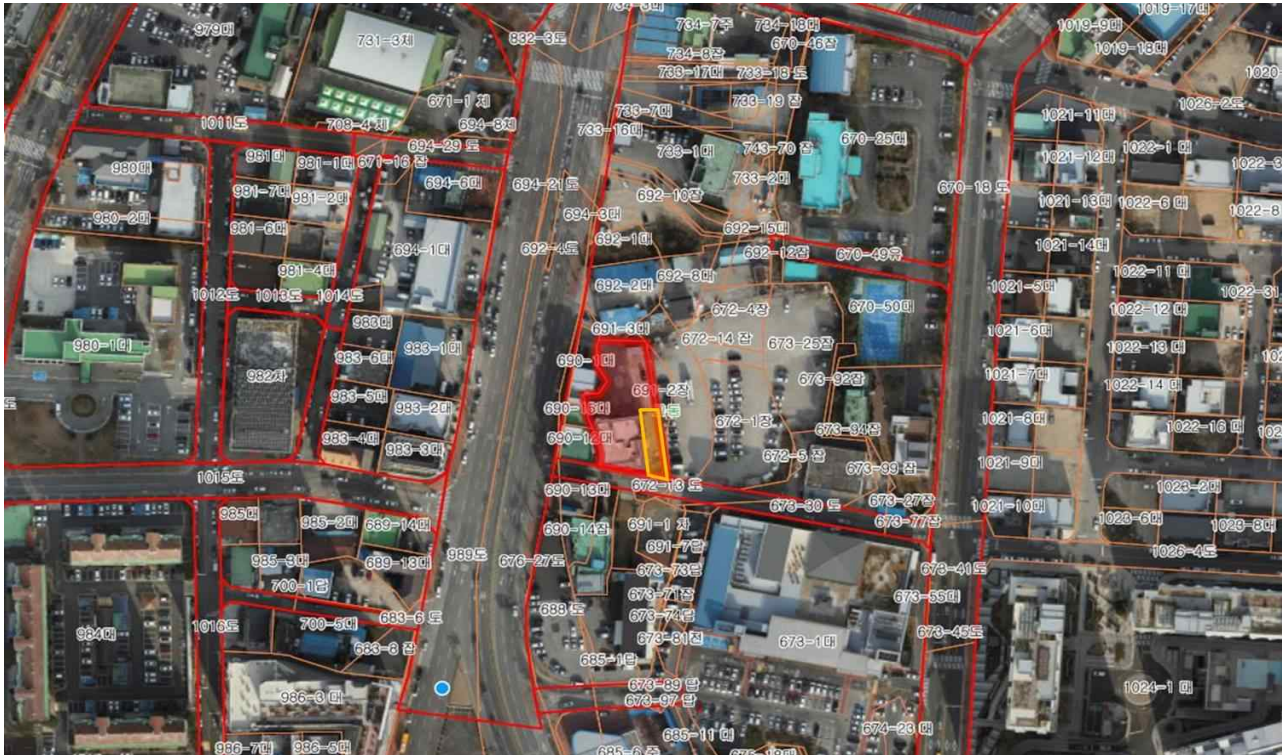
속 초 시 장

- 가. 공 고 명: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나. 도로위치: 속초시 교동 691번지
다. 공고방법: 속초시공보,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2024. 1. 19. ~ 2024. 2. 2. (14일간)
마. 도로 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허가 통보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강원도 속초시 교동	691	답	1,308	116	조○형	속초시 교동 691번지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창고시설 2021-건축과-신축허가-33 (2021. 4. 23.)	건축주: (주)디와이 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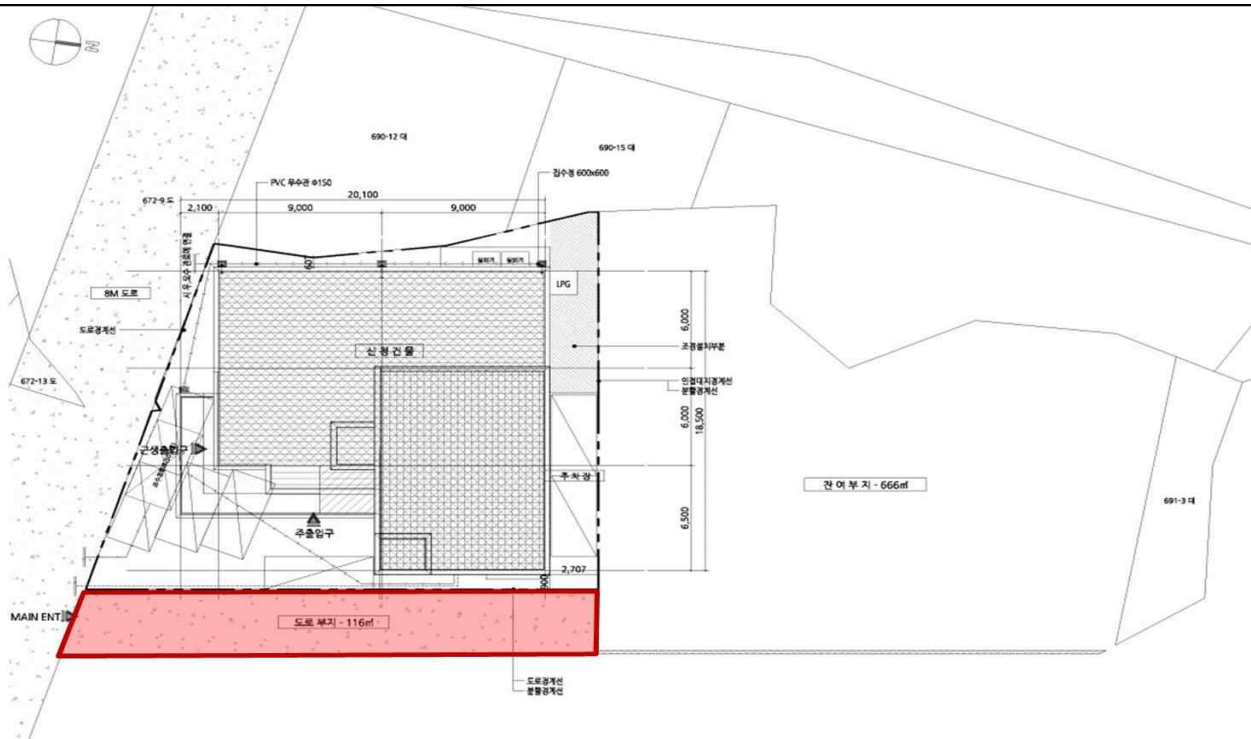
- 바. 관계도서: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사. 문의사항: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774)

위치도 및 현황도



위치도

축척 NONE



현황도

축척 NONE